

점자 규범 정비 및 보완에 관한 규정

제정 2015. 5. 26. 국립국어원예규 제119호
일부개정 2016.11. 9. 국립국어원예규 제131호
일부개정 2017.12. 28. 국립국어원예규 제136호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 점자 규정을 포함한 점자 규범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

1. '점자'란 시각 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. 이 경우 도형·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. [일부개정 2016.11.09]
2. '점자 규범'은 시각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언어 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데 관련되는 점자 사용의 기준 또는 지침을 지칭한다.

제 3 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점자 규범의 정비 및 보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'점자 규범 정비 위원회'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은 시각 장애인으로 한다.
- ③ 위촉 위원은 점자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국어원장(이하 '원장'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
- 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.

1.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
2.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
3. 국립장애인도서관장
4.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

⑥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.

1.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
2. 국어학, 수학, 과학, 음악, 정보통신 등 점자 규정 관련 분야 전문가
3. 심의 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⑦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일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필요한 수만큼 둘 수 있다.

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.

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
2. 사망, 질병, 장기 여행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⑩ 위원장 부재 시 참석 위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 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.

1. 점자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점자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점자 사용에 필요한 세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4. 점자 규정 및 세부 지침의 연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

제 5 조(운영)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④ 위원회 간사는 특수언어진흥과 소속 직원 1명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직원 1명으로 구성하며,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, 회의록 작성과 보관, 그 밖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나누어 수행한다. [일부개정 2017.12.28]

제 6 조(점자 규범 정비 절차 및 결과 반영)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원장에게 보고하고 점자 관련 주요 단체에 알리며, 심의 사항 중 점자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국어심의회에 상정하고, 그 밖의 사항은 국립국어원의 특수 언어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.

제 7 조(수당) 위촉 위원(간사 포함)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8 조(기타)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 <2015. 5. 26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6. 11. 9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7. 12. 28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